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86호 2019. 7. 11. (목)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156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3

## 【공 고】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29호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1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156호

##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간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9일

정 선 군 수

- 1. 도 로 명 : 수촌길
- 2. 부여사유 : 마을에 큰골과 안골이 있는데 큰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하여 불려진 지명인용
- 3. 도로구간 변경사항(연장)

구 분	제 원(m)		시작지점	끝지점	기초간격	기초번호	도 로 명 관할구역	유 사 도로명	동 일 도로명
	길이	폭							
변경 전	564	4	신동읍 고성리 220-2	신동읍 고성리 180	20m	1 → 58	정선군	-	-
변경 후	848	4	신동읍 고성리 220-2	신동읍 고성리 170	20m	1 → 86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29호

##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정 선 군 수

### 1. 개정이유

- 가. 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해당 농촌지도사업 신청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 나.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 내용 전반이 오래되어 현농정에 맞지않는 문장 및 단어 수정필요
- 다.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의 몇몇 조항에서 상위법인 강원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과 모순되거나 변형되어 상위법에 상응하도록 조정 필요

### 2. 주요내용

- 가.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제3조제3항을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개정
- 나.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제4조(기능)제1항제6호에 “다만, 심의위원 본인 및 본인이 속한 단체는 해당 농촌지도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라는 조항 신설
- 다.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제목 및 내용 전반에 있어서 상위법인강원도농

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 상응하도록 정정하고, 오래되어 현 농정에 맞지 않는 내용은 적정토록 현행화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 (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 연락처 : 전화(033-560-2555), 팩스(033-562-4153)
- 주 소 : (23103)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정선군농업기술센터

####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강원도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을 “정선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정선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정선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을 “심의회는 위원장,”으로,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를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을 “심의회의 위원장은”으로, “호선하며”를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로, “자가 된다”를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을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1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 1인(농과계고등학교)”를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1명(농업계열고등학교)”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과장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선군지부장, 정선군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장, 정선군 산림조합장

제3조제2항제4호 중 “정선군 생활개선회장”을 “생활개선회정선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정선군연합회장”으로, “농업단체대표 7인”을 “농업인단체대표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로서 정선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기술연구과장을 포함한 4인”을 “사람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를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으로, “부위원장 및 위원”을 “위원”으로, “하

되, 연임할”을 “하되 연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에서”를 “심의회에  
는”으로, “각1인”을 “각1명”으로,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위원은 본인 및 본인이 속한 단체가 신청한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  
을 심의할 수 없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역농업의”를 “지역농업”으로, “농업기술개발과제”를 “농업  
기술 개발 과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사항중 도농  
업산학협동심의회”를 “심의사항 중에서 강원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  
회”라 한다)”로, “사항이 나 기타”를 “사항이나 그 밖의”로, “대하여는 도농촌진흥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 조정”을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  
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조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무를 통리  
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 를”을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  
의회의 회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원장 또는”을 “위원장이나”로,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를 “1  
이상이 요구할 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5인이상 8인이하”를 “5명이상 8명이하”로,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 장”을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  
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의상”을 “심의에”로, “청취할”을 “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관계기관에 통지”  
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예산)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의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제11조 전단 중 “촉구하고” 를 “하고”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 을 “도 심의회위원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95.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제14조에 의거 정 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심의회는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p> <p>제3조(구성) ①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정선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u>정선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정선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정선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정선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p> <p>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 -----.</p> <p>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사람으로 성별균형</p>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  
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 1인(농과계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  
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라. 정선군 농업축산과장

2. (생 략)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선군  
지부장, 정선군 축산업협동조  
합장, 정선군 임업협동조합장

4. 농촌지도자정선군연합회장,  
정선군 생활개선회장, 농민후  
계자정선군연합회장을 포함한  
정선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  
인 이내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정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가. ----- 농학계  
열 대학의 교수 1명

나. 해당 ----- 농업계  
열 고등학교의 교원 1명  
(농업계열고등학교-----  
-----)

다.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과  
장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선군  
지부장, 정선군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조합장, 정선군 산  
림조합장

4. -----  
생활개선회정선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정선군연합회장--  
----- 농업인단체대표 7  
명 ---

5. 그 밖에 -----  
-----  
----- 사람 2명 --

선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장, 기술연구과장을 포함한 4  
인 이내

6. (생 략)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위  
원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서 간사와 서기 각1  
인을 두되, 간사는 정선군농업  
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을, 서  
기는 지도기획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  
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서  
신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  
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농업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  
-----  
-----

6.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  
----- 위원-----  
----- 하되 연임 할 -----  
---.

④ 심의회에는 ----- 각1명  
-----  
-----  
----- 사무-----  
-----.

제4조(기능) ①-----  
-----  
-----.다만, 심의위  
원은 본인 및 본인이 속한 단체  
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  
을 신청할 수 없다.

1. 지역농업 ----- 농업  
기술 개발 과제-----  
-----

2. (현행과 같음)

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  
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4. (생 략)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생 략)

②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 중심으로 심의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 심의사항 중에서 강원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 -- 사항이나 그 밖의 ----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조정-----.

제5조(위원장 등) ① -----  
-----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나 -----  
----- 1 이상 요구할 때 -----.

한다.

④ (생 략)

제7조(전문위원회) ① (생 략)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 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 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록) ①심의회는 회의 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 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 ①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 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①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전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 음)

②----- 5명이상 8명이하-----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 원장-----.

제8조(회의록) ①----- 갖추어 두어야 --.

②----- 간사가 서 명 또는 날인하여야 -----.

제9조(협조) ①----- 심의에 ----- 들을 -----.

②-----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 로 관계기관에 통지-----.

제10조(예산) 심의회에 필요한 경 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 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의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의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제11조(회의결과 활용) -----  
-----  
----- 하고.  
-----  
-----  
-----  
-----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  
-----  
----- 도 심의회  
위원장-----

<p>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생 략)</p>	<p>-. ② (현행과 같음)</p>
-------------------------------	--------------------------

상위법관계규칙 발취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25179호]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063-238-0715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13.>

[전문개정 2013. 9. 3.]

제2조(설치)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자치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시·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9. 3.]

제6조의2(시·군 심의회의 구성) ① 시·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5명 이내)

- 가. 해당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 계열 대학의 교수
-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 다. 시·군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라. 시·군의 농업 연구·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의 조합장 각 1명

4. 제3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4호·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9. 3.]

제6조의3(시·군 심의회의 기능) ① 시·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 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9. 3.]

제7조(위원장 등) ① 각급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 9. 3.]

제8조(회의) ①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각급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 9. 3.]

제9조(전문위원회) ①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3. 9. 3.]

제10조(회의록)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9. 3.]

제11조(협조) ① 각급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후속조치에 관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9. 3.]